

Contents

동급정보 365* _ 2009 May Vol.153

- 02 _ 칼럼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성공적인 판매단계
시행을 위한 제언
- 04 _ 기획특집
'쇠고기 이력추적제' 6월 22일 실시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해야 하나
- 07 _ 전문가 심층분석
MSY 22두 농장을 만들기 '후보돈 관리'
- 09 _ 농가 탐방-소
한우산업(개량)에 대(代)를 잇다
- 10 _ 농가 탐방-돼지
2008년 동급판정결과 양돈부문 우수상
'신화농산'을 찾아서
- 11 _ 동급정보 - 소
- 16 _ 동급정보 - 돼지
- 19 _ 동급정보 - 닭고기
- 20 _ 동급정보 - 계란
- 21 _ 지역축산소식/쇠고기 이력추적제
- 23 _ 동급판정소식 - 본부



'시원할...'

동급사업본부 고객지원팀 김은미 차대주

칼럼



(사)축산기업중앙회 유재춘 회장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성공적인 판매단계 시행을 위한 제언

● 이제 불과 한 달 남짓이면 국내에서 사육되고 유통되는 모든 소 및 쇠고기는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의 모든 정보가 기록·관리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해 12월 22일부터는 소의 경우 사육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이력추적제가 시행되고 있고 금년 6월 22일부터는 쇠고기 유통구조상 최종 단계인 판매단계까지 의무적으로 확대 시행되게 된다. 이에 따라 모든 식육판매업소들은 판매할 식육을 구매할 때 지육이든 부분육이든 모든 쇠고기에 대하여 정해진 서식의 '식육거래내역서'에 개체식별번호를 반드시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할 뿐 아니라 쇼케이스(진열장) 내에 쇠고기를 진열·판매시에도 정해진 '식육판매표지판' 상에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반드시 표기하고 판매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 및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범사업 등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심지어는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간편하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개체식별번호 숫자 12자리를 입력만 하면 소의 품종은 물론 성별·사육자·사육지·도축장·도축일자·등

급·위생검사 결과·가공상 등 필요한 모든 정보가 확인된다. 특히, 휴대폰을 이용하여 '6326'만 누르고 간단한 조작으로 개체식별번호를 입력만 하면 보다 간편하게 위의 모든 정보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최첨단 DNA 검사방법까지 개발에 성공하여 국내에서 도출되는 모든 소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시중에 유통 중인 쇠고기의 시료를 수거하여 서로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100% 판가늠할 수 있는 DNA 동일성 검사체계도 완전히 구축해 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면 유통 중인 쇠고기의 질병이나 위생·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나아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쇠고기 품질이나 등급 등 표시사항이 맞는지 혹은 허위표시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 불법유통을 쉽게 저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등급판매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어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통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 제도를 하루아침에 정착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본다. 아직도 상당수 업소는 영세할 뿐만 아니라 정보집약 면에서도 신속성이 떨어져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 및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서는 식육판매업소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식육판매표지판'을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해 주는가 하면 유통단체인 축산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 해도 홍보비를 지원하여 판매업소를 지도 및 홍보하도록 한 바도 있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최종 판매단계에서 보다 빨리 정착되기 위해 식육판매업소 경영자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자 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포장육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해야 한다. 판매장에 입고된 지육 또는 부분육은 개체별로 석이지 않도록 정형한 후 해당 쇠고기 또는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후 판매해야 한다.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할 때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또는 도축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번호와 구입당시 지육 또는 포장지에 표시된 번호를 확인하고 판매할 식육판매표지판에 동일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둘째,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거래내역서에 개체식별번호를 함께 기록·보관해야 한다. 거래내역서에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고 보관(1년)해야 한다.

셋째, 개체단위별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판매 업소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개의 개체를 한 개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 필리요령에 따라 하나의 묶음단위 포장을 하여 관리하면 된다.

질문적으로 금번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는 우리나라 쇠고기 유통산업에 있어서 위생안전성 측면은 물론 거래의 투명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논리적으로 너무나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시행조기 다소 불편하다더라도 식육업소에서 농 세도를 제대로 시행하여 친용할 때 소비자들이 정육전에서 구입한 한우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식육보다 훨씬 돈독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부에서도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형유통업체 위주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해서도 홍보비 지원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모든 판매업체에서 농 세도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현실여건에 맞는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1. 본 원고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의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